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안 미 자 의원)

의 안 번 호	25-9
------------	------

발의년월일 : 2025. 2. .

발 의 자 : 안미자,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한선미, 홍지광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경로 우대 감면을 시행할 경우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경로 우대 감면은 전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우리 구 예산 실정에 맞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의 경로 우대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어르신의 문화생활 여건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감면을 지원(안 제10조제5항)

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감면 비율을 조정(전액감면→50%)([별표2])

3.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26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5.1.23. ~ 1.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용료등을**”을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1인당 1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사용료등을</u>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 ⑥ ~ ⑧ (생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사용료</u> <u>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u> ----- -----. ⑥ ~ ⑧ (현행과 같음)																				
[별표 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대상</th><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비율</th></tr> </thead> <tbody>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액면제</td></tr> <tr> <td>「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td></tr> <tr> <td>「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td></tr> <tr>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td></tr> <tr> <td>「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td></tr> <tr> <td>「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td><td style="text-align: center;">20%</td></tr> </tbody> </table> ※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별표2]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대상</th><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비율</th></tr> </thead> <tbody>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td><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액면제</td></tr> <tr> <td>「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td></tr> <tr>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td></tr> <tr> <td>「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td></tr> <tr> <td>「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td></tr> <tr> <td>「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td><td style="text-align: center;">20%</td></tr> </tbody> </table> ※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1인당 1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앞쪽)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0조(사용료 등)
 -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
- 비용추계의 전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시 50% 수강료 지원(구민 1인 1강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						
	소계(a)						
세출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65세 이상 감면분)	178,464	178,464	178,464	178,464	178,464	892,320
	소계(b)	178,464	178,464	178,464	178,464	178,464	892,320
	□ 총 비용(a-b)	178,464	178,464	178,464	178,464	178,464	892,32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의존						
	재원						
	소계						
자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소계						
지방채							
민간자본							
구비		178,464	178,464	178,464	178,464	178,464	892,320
합계		178,464	178,464	178,464	178,464	178,464	892,320

5. 덧붙이는 의견: 2024년 65세 이상 수강인원 평균(1,708명)으로 산출되어 수강료 감면 시 수강자 증가 예상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최미진
연 락 처	02-3153-8315